

벨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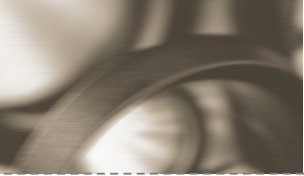
Paul Schoukens (벨기에 루벤대학교(K. U. Leuven), 법학과 교수)

■ 서론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를 위한 벨기에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명 형식을 사용하기로 하겠다. 벨기에 사회보장법에 의한 자영업자 집단을 정의한 후 제도의 구조를 간결하게 논의함으로써, 벨기에에는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그 제도가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의 윤곽을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의 다양한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서도 약술하기로 하겠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전통적인 사회보장의 위험요소(고령자, 유족으로의 권리 귀속, 근로능력 상실, 실업, 의료혜택, 가족에 대한 부담 등)를 다루되, 그 중에서 빈곤이라는 요소는 제외하기로 하겠다. 빈곤 문제를 다루는 제도가 원칙적으로 노동활동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국가 연구와 관련된 몇 가지 사실과 수치 등을 언급하면서 결론을 내리게 된다.

■ 사회보장에 있어서 자영업자의 개념

사회보장에 있어서, 자영업자 집단은 “벨기에 영역 내에서 근로계약에 연계되거나 공무원으로 임명됨이 없이 전문적인 성격의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된다. 이 법적 정의에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모두 존재한다.



여기서 긍정적인 요소는 전문적인 성격의 활동, 즉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는 회계상의 기준에 관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은 생계를 위한 소득을 얻고자 하는 의도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소득이 발생했는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 그 결과, 수입과 지출이 같거나 심지어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자영업자는 여전히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를 갖게 된다.

부정적인 요소는 '사회학적 요인'을 의미한다. 해당자는 임금근로자나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영업자라는 범주는 근로계약에 묶여 있거나 공무원으로 임명되지 않은 모든 전문적인 경제활동인구를 포괄하는 잔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그 결과, 자영업자 집단은 단일하게 구성되지 않고, 자유직, 무역상, 농민, 공예가, 프리랜서 등의 다양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다. 혹자가 근로계약하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위임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재하는 근로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위임자에게 종속된 경우(위임자는 업무에 관한 명령을 내리고 작업의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 그는 임금근로자로 간주된다. 그리고 종속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는 자영업자이다.

■ 제도의 구조

개 관

벨기에의 사회보장제도는 '비스마르크' 적인 것으로, 이는 전문적인 활동을 기초로 조직됨을 의미한다. 현재 3개의 전문적인 제도가 임금근로자(wage earner), 공무원(civil servant), 그리고 자영업자(self-employed) 등의 주요 전문직 집단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장은 모든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포괄적인 제도로서 조직된다. 이 제도는 고령자, 유족, 가족부양, 실업 등의 상황에서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와 별도로 파산을 위한 특수한 제도도 있다.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병보험과 단기 및 장기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보장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임금 근로자, 그리고 공무원이 적용되는 제도가 일반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의료혜택과 근로능력 상실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제도는 자영업자인가 근로자인가에 따라 다르다.

자영업자의 사회보장제도의 자금 확보를 책임지는 주요 기관은 RSVZ(Rijksinstituut Sociale

Verzekering Zelfstandigen)라고 하는 자영업자 기금인데, 이것은 자영업자들 자신과 정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준공공(semi-public) 기구이다. 급여는 특수한 기구(역시 준공공 기구)에 의하여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되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기금(RVP)과 상병기금(RIZIV)으로서, 특히 상병기금은 자영업자들이 회원으로 있는 민간 비영리 뮤추얼펀드의 보조를 받고 있다.


자영업자의 사회보장제도의 개인 적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영업자들은 전체적인 하나의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된다. 개인에 대한 적용 범위에 관련하여 이 제도는 사회보장법상 자영업자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15페이지 자영업자의 개념 참고). 이 제도에는 특정한 직업 활동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자신뿐만 아니라, 고용계약의 구속 없이 자영업자의 일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보조자(helper)’도 해당된다. ‘보조자’는 특정한 규정에 의하여 자영업자와는 구별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20세 미만의 미혼 보조자와 임시 보조자(occasional helper)(즉, 1년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임시적인 보조 역할을 하는 자)는 보험제도로부터 철저히 배제된다. 자영업자의 배우자가 보조자인 경우에는 단기 근로능력 상실 및 출산의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적용을 받고, 다른 경우에는 보조자/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혜택과 가족급여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피부양자들도 적용 대상이 된다. 피부양자의 주된 항목을 구성하는 것은 배우자와 자녀이다.

■ 재원 마련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장의 재원은 자영업자 자신의 부담금과 국가보조금(예산의 약 33% 차지)으로 구성된다. 부담금은 3년 전의 사업소득, 즉 과세 목적을 위한 소득 신고를 기초로 하여 산정된다. 자영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부담금 액수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된다. 즉, 주요 경제활동이 자영업인 자, 부업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 그리고 퇴직연령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등이다. 후자의 두 집단의 경우, 주요 직업이 자영업인 자에 비해 낮은 부담금이 책정된다.



부담금 체계에는 3가지의 소득 수준이 사용된다. 사업소득이 최저수준 (9,067.99 유로) 밑으로 떨어지면, 이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최소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자영업자에게 소득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소득이 최저 기준치 이상이면, 19.65%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소득이 44,289.23 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부담금 비율이 14.16%로 떨어지며, 끝으로 소득이 65,273.49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이 없다. 그러므로, 부과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부과 액수는 줄어드는 체감적(degressive) 납부방식을 따른다. 이것은 수입이 65,273.49 유로 이상이면 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더욱이, 자영업자들은 세금과 사회보장 등을 이유로 소득 신고를 낮추어서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예를 들면, 모든 자영업자의 60%는 연간 세전 총 수입을 12,500 유로 이하로 신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부담금의 대부분을 저소득 계층에서 확보한다는 발상이다.

법인으로 구성된 회사들은 자영업자의 사회보장제도에 고정적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담금의 액수는 회사 규모에 따른다. 이 조치는 1990년대에 자영업자들이 납부한 부담금 부족으로 인하여 자금난이 일어나자 취해진 것으로, 점점 많은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활동을 법인체로 조직하여 회사를 통하여 자기 자신에게 고정적인 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사회보장급여

고령자와 유족

퇴직연금은 65세 이상으로 근로를 중단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조기연금(anticipated pension)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기퇴직의 경우는 자영업자가 완전한 경력을 쌓은 (다소 이론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연금 수령액이 5% 삭감된다. 퇴직연금을 신청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업적 활동을 중단해야 하지만, 그러한 활동을 통해 취하는 수익이 정해진 액수보다 크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에 의하여 제한된 양의 소득활동을 할 수 있다.

연금은 20세 당시부터 연금수령 연령까지의 기간 동안 받았던 평균 (신고된) 소득의 비율로 산정된다. 기혼 가입자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근로 임금이나 소득대체급여가 없다는 가정하에 75%에 해당하는 액수를 수령할 수 있다(‘가족연금’). 그리고 다른 모든 경우에는 60%를 받게 된다(‘개인 연

금'). 완전한 연금은 자영업자가 45년간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보험 기록이 그보다 짧다면, 연금 수령액도 그에 비례하여 줄어든다. 임금소득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들의 (사업) 소득의 절반만이 연금 계산에 반영된다. 1984년에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연동연금이 도입되었을 때, 자영업자 집단은 더 높은 부담금을 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부담금 비율이 일반적으로 임금소득자 부담금 비율의 절반에 해당했기 때문에, 연금 산정시에도 신고된 소득의 절반만을 반영하도록 결정된 것이다. 그 결과, 많은 자영업자들은 결국 정해진 액수의 최저 연금, 즉 자영업자가 근로를 한 햇수와 피부양자의 여부(예를 들면, 가족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월 833 유로에 달하는 가족연금 수령)에 의해 결정되는 연금을 받고 있다.


사망한 자영업자의 배우자는 사망자가 받아야 할 퇴직연금의 80%에 해당하는 유족연금(widow(er)'s pension)을 받을 수 있다. 사망자가 아직 연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유족급여는 고령자 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나, 사망자가 사망한 연령을 최초 연금수령 연령으로 가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유족연금은 생존한 배우자의 연령이 45세 이상이거나, 연령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부양 자녀가 있거나 근로능력 상실자로 판정받은 자에게만 지급된다. 급여는 평생 지급되나, 재혼을 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고아를 위한 연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대신 사망한 부모가 재혼하였거나 동반자와 가정을 형성하지 않았다는 조건하에서 고아의 아동수당(child allowance)을 인상한다.

근로능력 상실

단기 근로능력 상실(상병 및 출산)과 장기 근로능력 상실(취업불능) 간에는 차이가 있다. 임금소득자와는 달리, 자영업자에게는 산재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을 특별히 보장하는 제도가 없다.

1) 상병 및 출산

자영업자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종사하던 자영업 활동을 중단해야 할 경우, 근로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자영업자는 최소 6개월(대기 기간) 동안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상병이 발생한 첫 달에 자영업자는 급여를 받지 못하며, 둘째 달



부터는 본인 부담의 연금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정해진 액수의 급여를 받게 된다(피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하루 23.05~30.53 유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출산을 하면, 그 기간(6주) 동안 직업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난 후에 1,962.50 유로의 정해진 액수가 지급된다.

2) 취업 불능(Invalidity)

1년 경과 후 근로능력 상실의 상태가 굳어질 경우, 자영업자는 계속해서 균일한 액수의 급여를 수급받게 된다. 이 급여는 상병급여보다 약간 높은 수준(최고 33.70 유로/일)으로 지급된다. 해당 자영업자에게 피부양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함께,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었는지의 여부와 해당 자영업자가 제3자로부터의 간병 보조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지의 여부가 검토된다.

3) 실업

자영업자들은 임금근로자들과 같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1997년에는 특별한 파산 보험이 마련되었다. 부정이 개입되지 않은 파산의 경우, 자영업자는 이 보험에 가입하여 최대 1년 동안의 료혜택과 가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해당자는 유사한 급여를 지급하는 다른 법적 사회보장제도(예를 들면, 배우자 명의의 보험 등)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보장과 함께, 자영업자는 6개월 동안 피부양자의 여부에 따라 액수가 결정되는 일시금 급여(lump-sum benefit)를 받게 된다(월 최대 수급액은 697.90~837.49 유로). 원칙적으로 자영업자는 자신의 경력기간 중에 단 한 번만 파산 보험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의 기반에서 직업적 활동을 중단한 자영업자에게 (더 이상) 소득대체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벨기에에 거주하는 자로서 충분한 생활수단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 존엄성을 지키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있다.

의료 혜택과 가족급여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와 그 피부양자들은 의료비를 금전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들이 지급한 의료비는 그들이 납부한 보험료에서 차감되어 다시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이 입원, 대수술, 출산, 전문 의료혜택 등 소위 '중질환(major risks)'으로 한정된다. 의사에 의한 1차 진료, 치과 진료 및 의약품과 같은 '가벼운 질환(minor risks)'은 자영업자의 의무가입 보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그러한 가벼운 질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은 신청인 자신의 자녀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 전 배우자, 또는 미혼 동반자의 자녀, 가족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형제·자매가 다른 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국가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가족 내에 편입한 경우 등도 지급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수당은 의무교육 연령(18세)까지는 지급이 가능하나, 이 기간은 교육을 계속할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다. 이러한 가족수당은 모든 직업 분야에서 동일하게 지급된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작은 차이가 존재하기는 한다. 자영업자의 첫 자녀에게는 현저하게 적은 액수가 지급된다.

자영업자의 부분적인 의료혜택 보장과 다소 미흡한 가족수당제도는 어느 것도 법적·기술적 근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주요 원인은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가 재원이 불충분하여 현행 보장제도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법적인 사회보호를 위해 더 많은 부담금을 납부할 의지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 결론

1960년대 말에 도입된 벨기에의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유럽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이다. 그것은 벨기에 영토 내에서 직업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제도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제도는 몇 가지 장점을 가지게 된다. 자영업자들은 그것을 정부와 함께 관리하는 '자신들의' 제도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자영업자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기 위한 이상적인 출발점이기도 하다. 자영업자들을 기존의 임금근로자를 위한 제도에 편입시켰을 때, 사회보호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파산 보험의 도입을 제외하고, 이 제도는 사실 원래의 상태에서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 오늘날, 이 제도는 좋지 못한 이미지로 인해 시달리고 있다. 연금을 포함한 급여는 고정된 소액으로, 자영업자가 그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자영업자들은 사회보장을 위해 내야 하는 부담금을 단지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세금 정도로 생각할 뿐이다. 자영업자들 사이에는 소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급여를 위해 더 많은 부담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점점 더 팽배하고 있다. 따라서, 벨기에의 제도는 자영업자들이 단순히 일반적인 근로자 제도에 통합되기 전에 긴급히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 벨기에(사실과 수치)

- 표면적 : 30,528 km²
- 인구-인구밀도 : 1020만 명 - 334 /km²
- 수도 : 브뤼셀(Brussels), 인구 954,000명
- 정치 제도 : 입헌군주제
- 공식 언어 : 독일어, 불어, 네덜란드어
- GDP : \$ 297,600,000,000
- 자영업자의 수 : 약 590,000명 (본업), 150,000명 (부업)
- 사회보장 예산 (단위: 백만 유로) : 2005 (예산 초안) : 3,618,000,204 **KLI**